

울 산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0가단22995 사해행위취소 등
원 고 이OO (4*****-1*****)
울산 울주군 **읍 **리 ***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
담당변호사 김순득

피 고 홍OO (4*****-2*****)
울산 남구 **동 ***
소송대리인 유민정

변 론 종 결 2011. 4. 12.
판 결 선 고 2011. 5. 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와 유OO 사이에 2008. 2. 29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유OO의 상속인인 유OO에게 울산지방법원 2008. 3. 3. 접수 제

2***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07. 3. 12. 울산 울주군 상북면 00리 산 000 임야 3,174㎡의 매수대금으로 유OO에게 22,000,000원을 교부하였다.

나. 유OO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지 않자 원고는 2008. 7. 24. 유OO와 사이에, 유OO는 원고에게 2008. 12. 31.까지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 위 돈에 대하여 2007. 3. 12.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%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.

다. 유OO는 2008. 2. 29. 자신의 처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고 함)을 증여한 후 2008. 3. 3.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.

라. 피고와 유OO는 1971. 11. 29. 혼인하였다가 2008. 4. 2. 협의이혼하였고, 둘 사이에 딸 2명과 아들 1명이 있다.

마. 유OO는 2010. 2. 16. 사망하였다.

[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7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(1) 원고는 피고와 유OO 사이의 협의이혼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이혼이

고 유OO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한다.

(2)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나. 판단

(1)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,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, 이러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(2) 먼저, 유OO가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지고 약 한 달 후에 피고와 유OO가 협의이혼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피고들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.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유OO 사이의 협의이혼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유OO가 사망하기 얼마 전 피고와 유OO가 함께 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,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유OO 사이의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(3) 다음으로, 유OO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피고와 유OO 사

이의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였는지에 관하여 보전대, 갑 제2, 7, 10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을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① 피고와 유OO가 약 3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사실, ② 피고와 유OO가 협의 이혼할 무렵 유OO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울산 을주군 언양읍 OO리 000 답 940㎡ 중 지분 1/3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, ③ 2008.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7,265,160원, 위 OO리 345-7 답 940㎡ 중 지분 1/3은 8,365,999원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, 이에 의하면 유OO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 보기 어려워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효진

(별지)

목 록

1. 울산 울주군 언양읍 00리 000 전 172m²
2. 울산 울주군 언양읍 00리 산 000 임야 662m². 끝.